

한국소비자보호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 18 기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제 17 기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하나안진회계법인

목 차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수지계산서.....	
수지계산서.....	
수지계산서에 대한 주석.....	
부속명세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한국소비자보호원

이사회 귀중

본 감사인은 첨부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2004년 12월 31일과 2003년 12월 31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수지계산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와 수지계산서를 작성할 책임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와 수지계산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 및 수지계산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한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 및 수지계산서가 중대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 및 수지계산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 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 및 수지계산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및 수지계산서 작성을 위해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경영자가 적용한 회계원칙과 중요한 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9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상기 재무제표는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선급금과 장기차입금이 각각 450,000천원만큼 과대계상되었으며 이는 기업회계기준과 불일치하는 것입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위 문단에서 언급한 사항이 재무제표 및 수지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상기 재무제표 및 수지계산서는 소비자보호원의 2004년 12월 31일과 2003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결손금의 변동과 현금흐름의 내용 및 수지계산을 한국의 기업회계기준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회계규정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양 승 우

2005년 3월 2일

본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본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
점 사이에, 첨부된 소비자보호원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본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
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004년 12월 31일 및 2003년 12월 31일

한국소비자보호원

1.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개요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의 기본권의 보호 및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1987년 7월 1일자로 설립된 비영리 공공법인으로 1996년 7월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에 청사를 준공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소비자보호를 위한 물품 및 용역의 시험, 검사와 정보수집, 소비자의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재원은 대부분 정부출연금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한국회계연구원 산하 회계기준위원회는 회계정보의 유용성과 기업회계기준의 국제적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를 2001년 3월 기준서 제1호를 시작으로 하여 제17호까지 제정·공표하였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당 회계연도에 기준서 제10호, 제12호 및 제13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며(기준서 제1호 내지 제9호는 전기 이전 회계연도부터 적용), 당기부터 조기적용이 가능한 기준서 제14호 내지 제17호는 당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회계기준을 적용한 소비자보호원의 당기순이익 및 순자산은 종전의 방법을 적용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중요한 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직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의 방법과 비교하여 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주요변경내용
제10호 재고자산	재고자산평가손실 환입규정 명시 및 정상조업도에 의한 제조원가 산정
제12호 건설형 공사계약	내용확대
제13호 채권·채무조정	채권·채무 조정시점 명시 및 채권자 및 채무자 회계처리에 대한 구체적 규정

소비자보호원은 관계법령과 회계규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회계규정에서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이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채택하고 있는 중요한 회계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출연금

소비자보호원은 정부출연금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가. 사업운영비 지출을 목적으로 수령하는 정부출연금은 당해 연도 사업운영비를 수익으로 인식하며, 출연금수령액 중 차기이월 집행액 및 미정산액은 선수금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나. 유형자산 취득을 위한 정부출연금은 당해 연도 집행액을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며 유형자산 처분시에는 당초 취득원가 및 감가상각누계액을 자본잉여금 및 자본잉여금조정계정에서 차감하고, 순장부가액을 정부출연금수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차기이월 집행액 및 미정산액은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수익인식기준

소비자보호원의 수익은 연도별 예산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가. 정부출연금 수입 : 상기 “(1)” 참조

나. 출판물 판매수입

소비자보호원에서 발간하고 있는 “소비자시대”등의 출판물 판매수입은 위탁판매의 경우 위탁자의 인도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직접판매 등의 경우에는 도서의 인도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시험검사수입과 교육훈련수입

소비자보호원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의뢰받은 시험검사와 교육훈련 용역에 대한 수입은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 광고수입

소비자보호원에서 발간하고 있는 “소비자시대”에 게재되는 광고에 대한 수입은 광고비 수취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마. 수탁용역수입

소비자보호원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수입은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바. ECRC (Electronic Consumer Resource Center) 수입

전자상거래 지원센터사업으로 정부출연금 수입과 교육훈련용역에 대한 수입으로 구성되며, 교육훈련수입은 해당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 임대수익

소비자보호원의 청사건물 임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해당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비자보호원은 청사건물의 임대수익에 대하여 전기까지는 사업외수익으로 처리하였으나 당기부터는 사업수익으로 표시하였습니다.

(3)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계속기록법과 매기말 실지재고조사에 의하여 그 수량이 파악되며, 총평균법에 의하여 산정된 취득원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순실현가능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4) 대손충당금

소비자보호원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출판물 판매사업으로부터의 미수금잔액에 대하여 장래의 대손추산액을 근거로 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5) 유형자산의 평가 및 감가상각방법

유형자산은 취득원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수선비 중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당해 자산의 원가에 가산되며, 단지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당기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하기의 추정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에 의하여 계상되고 있으며, 장서는 감가상각하지 아니하고 폐기시에 취득원가를 폐기손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 목	내 용 연 수(년)
건 물	40
시험검사기기	3
차량운반구	5
기타의 유형자산	5

(6) 퇴직급여충당금

소비자보호원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을 국민연금전환금의 과목으로 하여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7) 리스회계처리

소비자보호원은 리스기간 중 실질적인 계약해지 금지조건이 부과된 리스로서,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소비자보호원에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나 계약종료시 리스물건의 염가 구매 선택권이 부과된 경우 또는 리스기간이 리스자산의 내용연수의 100분의 75이상인 경우 또는 기본리스료의 현재가치가 리스자산 공정가액의 100분의 90이상인 경우의 리스거래를 금융리스로, 기타의 리스거래를 운용리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금융리스를 리스 계약상 지급하기로 한 기본리스료 총액에서 리스실행일 이후에 속하는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하고 있으며 동 리스자산은 소비자보호원 소유의 다른 유형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8) 자본잉여금 조정계정

소비자보호원은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자본잉여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현금및현금등가물 등

당기 및 전기말 현재 소비자보호원의 현금및현금등가물, 퇴직예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내역	금융기관	당기	전기
가. 현금 및 현금등가물			
현금		135	537
보통예금	신한은행 등	64,262	67,008
당좌예금	신한은행	534	2,412
신탁형 저축 등	대한투자신탁 등	943,004	1,200,000
MMF	신한은행	-	136,371
슈퍼기업예금	신한은행	261,494	143,507
	소 계	1,269,429	1,549,835
나. 퇴직예치금			
MMF	신한은행	115,090	173,105
	합 계	1,384,519	1,722,940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퇴직예치금으로 예치된 금액은 소비자보호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만 사용가능합니다.

4. 선 급 금

당기 및 전기말 현재 소비자보호원의 선급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내 역	당 기	전 기
사업비 선급금 등	30,867	44,035
장기차입금 상환 선급금	-	450,000
	<u>30,867</u>	<u>494,035</u>

5. 임직원장기대여금

당기 및 전기말 현재 소비자보호원의 임직원 장기대여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대 출 한 도	상 환 기 간	당 기	전 기
학자금	1인당 1회 250만원	12개월거치 12개월분할	52,066	44,452

6. 유형자산

(1) 당기말 현재 소비자보호원이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가. 취득원가

구 분	기초잔액	취득	처분	기말잔액
토지	8,085,646	-	-	8,085,646
건물	28,943,595	-	-	28,943,595
시험검사기기	5,921,114	209,096	-	6,130,210
차량운반구	140,809	-	-	140,809
기타의유형자산	2,479,612	671,696	-	3,151,308
장서	383,197	8,054	-	391,251
합 계	<u>45,953,973</u>	<u>888,846</u>	<u>-</u>	<u>46,842,819</u>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나. 감가상각누계액

구 분	기초잔액	감가상각	처분	기말잔액
건물	5,787,147	723,590	-	6,510,737
시험검사기기	5,590,951	233,510	-	5,824,461
차량운반구	76,514	22,030	-	98,544
기타의유형자산	1,920,930	290,576	-	2,211,506
합 계	13,375,542	1,269,706	-	14,645,248

(2) 전기말 현재 소비자보호원이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가. 취득원가

구 분	기초잔액	취득	처분	기말잔액
토지	8,085,646	-	-	8,085,646
건물	28,943,595	-	-	28,943,595
시험검사기기	5,573,924	347,190	-	5,921,114
차량운반구	131,067	23,260	13,518	140,809
기타의유형자산	2,028,766	450,846	-	2,479,612
장서	364,163	19,034	-	383,197
합 계	45,127,161	840,330	13,518	45,953,973

나. 감가상각누계액

구 분	기초잔액	감가상각	처분	기말잔액
건물	5,063,557	723,590	-	5,787,147
시험검사기기	5,285,790	305,161	-	5,590,951
차량운반구	66,362	23,670	13,518	76,514
기타의유형자산	1,633,216	287,714	-	1,920,930
합 계	12,048,925	1,340,135	13,518	13,375,542

(3) 당기말 현재 소비자보호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소 재 지	총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6,611.7	8,085,646	18,843,345

(4) 당기말 현재 보험가입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보험종류	보험금액	연간 보험료	보험회사
건물 등	종합보험	27,234,849	4,516	AIG 보험
시험검사기기	동산종합보험	1,784,606	1,843	동양화재
차 량 운 반 구	자동차보험	-	2,559	교보자동차
합 계		29,019,455	8,918	

상기사항 외에 소비자보호원은 서울보증보험에 신원보증보험 및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7. 선 수 금

(1) 당기 및 전기말 현재 소비자보호원의 선수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당 기	전 기
당회계연도 정부출연금 미집행액등(주석13참조)	296,893	266,783
출판물 판매대금 선수금	35,277	37,773
용역사업 선수금	-	87,100
기타	-	1,220
	332,170	392,876

(2) 선수금에 포함된 당기 및 전기 회계연도의 정부출연금 미집행액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당 기	전 기
시험검사기기 미집행 이월액	35,000	162,160
시험검사기기 선급금	30,867	44,035
선급비용	6,886	8,588
시설장비 미집행 이월액	2,900	33,100
소비자정보 미집행 이월액	221,240	18,900
	296,893	266,783

8. 차 입 금 등

(1) 당기 및 전기말 현재 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가. 단기차입금

차 입 처	종 류	이자율(%)	당 기	전 기
신한은행	일반자금대출	5.39	52,066	44,452

나. 장기차입금

차 입 처	종 류	이자율(%)	당 기	전 기
신한은행	일반자금대출	4.29~4.40	1,950,000	1,950,000

(2) 리스미지급금

당기말 현재 소비자보호원은 신보캐피탈 등으로 부터 리스계약에 따라 업무용 컴퓨터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단위:천원).

차 입 처	종 류	이자율(%)	금 액
신보캐피탈(주)	금융리스	10.2	8,131
신한캐피탈(주)	"	3.7~7.5	207,876
롯데캐피탈(주)	"	7.3~8.7	202,723
군인공제회C&C		5.2	82,316
계			501,046
차감: 유동성대체			(140,636)
잔 액			360,410

상기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연도별 상환리스료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연 도	상 환 액
2005년	140,636
2006년	114,008
2007년	120,608
2008년	107,873
2009년 이후	17,921
합계	501,046

9. 퇴직급여충당금

당기 및 전기 중 퇴직급여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당 기	전 기
기초잔액	2,438,618	1,537,755
당기전입액	1,023,462	975,060
당기지급액	(-)110,273	(-)74,197
기말잔액	3,351,807	2,438,618

10.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당기말 현재 소비자보호원은 신한은행과 2,600,000천원의 일반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11. 자본잉여금

소비자보호원은 정부출연금수입 중 유형자산 취득을 위한 당해연도 집행액을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을 처분시에 당초 취득액을 자본잉여금에서 차감하고 있는 바, 당기 및 전기 중 자본잉여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당 기	전 기
기초자본잉여금	45,953,973	45,127,161
당기유형자산취득액		
시험검사기기	209,096	347,190
차량운반구	-	23,260
기타의 유형자산	671,696	450,846
장서	8,054	19,034
	888,846	840,330
당기 유형자산 감소액	-	(-)13,518
기말자본잉여금	46,842,819	45,953,973

12. 자본잉여금 조정계정

소비자보호원은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익계산서상의 비용이 아닌 자본잉여금조정계정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당기 및 전기 중 자본잉여금조정계정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당 기	전 기
기초자본잉여금조정계정	13,375,542	12,048,925
당기감가상각비 등	1,269,706	1,340,135
당기처분자산감가상각누계액	-	(-)13,518
기말자본잉여금조정계정	14,645,248	13,375,542

13. 정부출연금수입

당기 및 전기중 정부출연금수입 및 출연금조정계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당 기	전 기
정부출연금 수입	14,776,000	13,985,000
출연금 조정계정		
증가:		
전기 선수금 당기이입액	266,783	450,227
당기에 처분된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	13,518
	266,783	463,745
감소:		
당기 유형자산취득집행액의		
자본잉여금대체액 (주석 11참조)	(888,846)	(840,330)
당기 선수금 계상액 (주석 7참조)	(296,893)	(266,783)
	(1,185,739)	(1,107,113)
합 계	(918,956)	(643,368)

14. 부가가치의 산정

당기 및 전기말 현재 소비자보호원의 부가가치산정에 필요한 계정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천원).

과 목	당 기	전 기
급여	7,187,060	6,013,075
퇴직급여	1,023,462	975,060
복리후생비	1,214,506	1,821,937
임차료	15,840	13,200
감가상각비	1,269,706	1,340,135
세금과공과	453,063	410,628
계	11,163,637	10,574,035

15. 법인세등

소비자보호원은 수익사업으로 분류되는 출판물 판매수입, 시험검사수입 및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 등의 납부의무가 있으나 과거 결손의 누적으로 납부할 법인세는 없습니다.

16. 종업원 복지

소비자보호원의 종업원 복지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생활안정지원	학자금 대부 재해보상금 지급
소비자보호원 생활지원	구내식당 등 운영 및 피복비 지원
건강증진, 노후안정지원	정기종합검진을 통한 건강관리 체육시설 설치, 운영 체육의 날 또는 체육주간 선정, 운영

17. 전기오류수정손익

당기 및 전기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1) 전기오류 수정이익:	당 기	전 기
전기 리스료의 과대계상	-	156,512
2) 전기오류 수정손실:	당 기	당 기
미수금의 과대계상 등	-	425

18. 현금흐름표

(1) 현금흐름표의 현금은 대차대조표의 현금및현금등가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현금흐름표상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당기감가상각비의 자본잉여금조정계정 대체	1,269,706	1,340,135

19. 전기 감사의견의 한정사유

소비자보호원은 전기 중 차입금 450,000천원을 이자부담 등 자금운영목적상 전기초에 일시상환 후 재차입하지 않았으나 상환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소비자보호원이 차입금 상환을 위한 지출예산편성이 따르지 않는 한 상환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점에 상환하기 위하여 유보한 것으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경우 전기의 선급금과 장기차입금이 각각 450,000천원만큼 과대계상 되어 있습니다.

20. 재무제표의 사실상 확정일 및 승인기관

소비자보호원의 재무제표는 이사회에서 2005년 3월 21일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수지계산서에 대한 주석

한국소비자보호원 (이하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에 의거 수지계산서를 작성하고 있는 바, 이는 수입부문과 지출부문을 실행예산 기준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이 수지계산서를 작성하는 기준은 원칙적으로 현금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출연금과 출판물 판매수입 등은 당기에 현금으로 수입된 것과 전년도 미수수익 및 불용액으로서 당기로 이월된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지출부문에서도 인건비, 사업비, 건설비 그리고 운영비로서 당기에 현금으로 지출된 것과 사고이월액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른 수지계산서의 세부 계산내역은 아래의 주석과 같습니다.

1. 정부출연금 수입은 손익계산서상의 정부출연금수입 14,776,000,000원입니다. 이로 인하여 가감된 출연금은 출연금 조정계정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2. 이자수익 집행실적은 손익계산서상의 이자수익 136,719,598원 중 당기계상 미수수익 1,623,638원, 선급법인세 20,463,310원 및 퇴직예치금 재원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중 선급법인세 부분을 차감한 순이자 9,477,363원을 제외하고, 전기 미수수익 10,722,148원 및 전기 선급법인세 17,150,750원을 가산하고, 자금예치와 관련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잡수익 1,442,368원을 가산하여 당기에 실현된 이자수익만 계상한 것입니다.
3. 시험검사수입 집행실적은 손익계산서상의 시험검사수입 5,283,441 원입니다.
4. 출판 · 광고수입 집행실적은 손익계산서상의 출판물 판매수입 184,356,182원과 광고수입 6,500,000원에 당기 선수금 중 30,441,340원, 당기 가수금 중 358,700원 및 전기 미수금 중 10,471,667원을 가산하고, 당기 미수금 1,893,215원, 전기 선수금 33,280,414원과 전기가수금의 당기대체분 30,000원과 입금시 공제된 입금수수료를 비용처리함에 따른 190,830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5. 수탁용역수입 집행실적은 손익계산서상의 수탁용역수입 398,552,722원에 전기미수금 중 12,000,000원을 가산하고 전기선수금 중 87,100,000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6. 교육훈련수입 집행실적은 손익계산서상의 교육훈련수입 27,200,000원입니다.
7. 전년도 이월금 집행실적은 전기의 예산집행잔액으로 당기의 예산에 편입된 1,016,430,000원을 가산한 것입니다.

수지계산서에 대한 주석 - 계속

8. 임대수입의 집행실적은 손익계산서상 임대 및 관리비 수입 386,678,748원 중에서 임대관리 전기미수금 중 1,983,956원을 가산하고 당기미수금 4,639,121원과 전기임대료선수금 1,220,038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9. 기타수입의 집행실적은 손익계산서상 임대 및 관리비 수입 25,579,705원과 전기 임차보증금 일부 환입금액 28,000,000원과 전기의 사고이월예산집행잔액 13,259,015원을 가산한 금액입니다.

부 속 명 세 서

본 감사인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2004년 및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수지계산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별첨 부속명세서에 대하여도 본 감사인은 한국의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별첨 부속명세서는 위에 언급한 재무제표 및 수지계산서와 관련하여 동 부속명세서에 포함하여야 할 재무정보를 한국의 기업회계기준 및 한국소비자보호원 회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별 첨 : 1. 운영비명세서